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및 실무

【문제 1】 햄버거를 판매하는 가맹본부 A는 가맹중개인 B와 창업컨설팅 용역계약을 맺고 수익성 검토, 자료제공 및 가맹계약 진행관리 등을 의뢰하였다. B는 2020년 4월 14일 자신을 찾아온 가맹희망자 C에게 A의 햄버거 가맹사업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를 제공하였고, 2020년 4월 15일 또다시 자신을 찾아온 C에게 월매출 3천만원일 때 예상되는 수익과 비용부분을 설명하였다. 그러나 A와 가맹계약을 맺은 가맹점사업자의 실제 월평균 매출액은 5백만원이었고, B가 가맹희망자들에게 월매출을 사실과 다르게 말하는 것을 A는 알고 있었지만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는 아니하였다. 2020년 4월 16일 A와 C는 가맹계약을 체결하였고, 가맹계약 체결시 B는 C에게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의 수령일자를 2020년 3월 25일로 소급하여 기재하게 하였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50점)

물음 1) B가 C에게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의 수령일자를 소급하여 기재하게 한 행위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지 설명하시오. (30점)

물음 2) C가 가맹점 개설이후 자신의 월평균 매출액을 산정하였더니 5백만원이었다. 가맹계약 체결전에 B가 C에게 월매출 3천만원으로 수익과 비용부분을 설명한 행위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지 설명하시오. (20점)

【문제 2】 가맹본부 X는, 가맹점사업자 Y의 점포 간판이 노후화하여 추락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여 Y에게 간판의 교체를 요구하였다. 아울러 X는 간판교체비용의 10%를 부담하기로 하였다. 단, Y 점포의 간판이 노후화되어 추락위험이 발생한 데에 Y의 귀책사유는 없었다. 이 경우 X가 간판의 교체를 요구한 행위와 교체비용의 10%를 부담한 행위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위반되는지 설명하시오. (25점)

【문제 3】 가맹본부가 가맹계약 갱신 과정에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상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가맹점사업자와 합의하여야 한다. 이 영업지역 변경사유들을 설명하시오. (25점)